

“노사협력 밀알되어 극복되는 경제위기”

행정자치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1106호 /전화3703-4623(행)4623 /전송3703-5529

조직정책과 과장 서필언 서기관 임만규 담당자 박민식

문서번호 조정 12200 - 120

시행일자 2001. 3. 26.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선 람	조정실	16	지 시	
접 수	일자 시각 번호	2001. 3. 27 254	결 재 · 공 람	심의회 과장
처 리 과	총무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국무총리지시 제2001-13호)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 끝.

국무총리

받는곳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의문자진상규명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행정관리담당관실, 교원정책과),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행정관리담당관실, 자치제도과)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2001年度 政府組織管理指針

2001. 3.

行政自治部

順序

1 2001年度 政府組織管理 目標

2 2001年度 政府組織管理 方針

3 主要施策

I. 政府構造調整의 蹤跌없는 마무리

II. 政府 組織·人管理의 減量基調 維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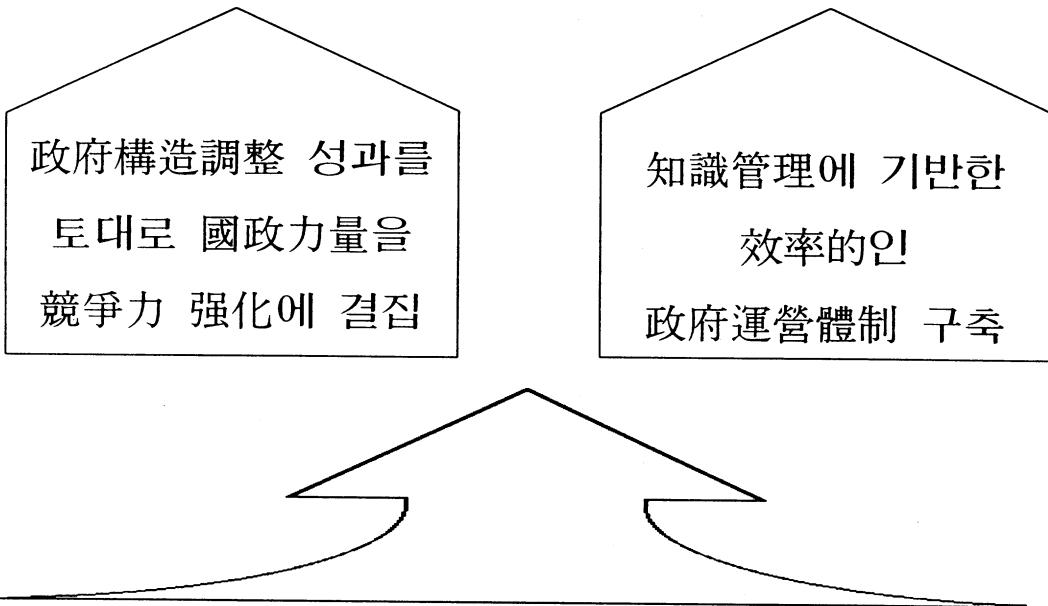
III. 知識政府에 걸맞는 彈力的 組織運營方式 擴大

IV. 委員會 整備 및 行政權限 委任委託 內實化

4 行政事項

2001年度 政府組織管理 目標

『競爭力 있는 政府, 強力한 政府』具現



< 21세기 새로운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

- 사회 제분야의 世界化, 국가간 無限競爭의 심화
→ 世界一流 수준의 國家競爭力 확보 요구
- 知識情報화가 국가발전의 原動力으로 부각
→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知識政府 具現 필요
- 社會價值의 多元化, 국민 要求水準의 증대
→ 사회 제부문간 이해를 調整 · 統合할 수 있는 國政管理
力量 요구

2001年度 政府組織管理 方針

□ 政府構造調整의 차질없는 마무리

- 정부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수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 신설·개편 부처의 업무수행체제를 재정비한다.

□ 政府組織·人力量管理의 減量基調 維持

- 총정원제와 연계하여 인력증원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감축,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는 강화 원칙'을 견지한다.
- 조직·정원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 知識政府에 걸맞는 弾力的 組織運營方式 擴大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탄력적 조직운영방안을 강구한다.
- 기술·연구 등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지식정보형 정부 조직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 委員會 運營, 行政權限 委任·委託의 內實化

- 불요불급한 정부위원회는 정비하고, 시민단체·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 행정기능의 위임·위탁·이양을 내실화하여 정부조직을 핵심역량위주로 간소화한다.

主 要 施 策

I. 政府構造調整의 蹤跌없는 마무리

1. 政府構造調整의 完遂 및 安定化

- (1)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99. 5. 24 제2차 정부 조직개편시 확정된 '2001년도 인력감축 및 기구개편계획(정부 구조조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의 장은 법령개정·연구용역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 금년도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중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해소, 인력 재배치, 업무 재배분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政府組織改編 後續措置 早速 마무리

- (1) 부총리제·여성부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개편된 부처의 장은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법규를 정비·보완하는 등 업무 수행체제를 재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II. 政府 組織·人力管理의 減量基調 維持

1. 總定員制와 連繫한 '작은 政府' 基調 維持

- (1)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량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행정기관의 기구 및 인력 증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의 수요를 예측하여 익년도 소요정원 책정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부처의 증원요구를 검토함에 있어서 신규인력증원은 원칙적으로 다음 분야에 한정하여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률 제·개정으로 신규업무가 부가되거나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경우
- 대규모 시설 또는 장비의 증설·도입에 따라 신규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사항
-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수행 체제 합리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
-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해요인 증가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항

(4) 행정자치부장관은 (3)항의 증원심사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으로 예상되는 행정생산성, 행정서비스 개선의 정도
- 기존 기구의 개편, 인력 재배치,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인한 자체상계 가능 여부
- 해당기능의 장기적 계속 수행 필요성 및 민간위탁·지방이양 가능성
- 기관간 유사·동일 기능 수행기구 존재여부 및 업무수행 체제 재편 가능성

(5)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장급이상 정원이 증가되는 직제개정 요구사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방향과 처리 계획을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6) 각 부처의 장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의 증원 수요는 원칙적으로 인력재배치, 업무수행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관내 자체상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은 신규인력증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후 인력수요, 인력절감 가능분야 등을 감안하여 정원감축 기준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각 부처의 장은 「정원감축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업무중 민간위탁·이양, 지방이양 및 기능폐지, 정보화 등 인력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8) 각 부처의 장은 정부조직 및 인력의 증가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법령 제·개정사항, 대규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도입 사항 등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9)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기구·인력의 감축 및 신규수요분야로의 재배치, 민간위탁 적극 추진 등 국가공무원에 준한 조직 및 인력의 감축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新設·改編 組織 등에 대한 事後管理 強化

- (1)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신설·개편된 조직이나 신규증원된 인력의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정부구조조정이후 신설기구 등에 대하여 조직의 설립목표 달성여부, 인력운영의 적절성,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사후점검하여 당해 기구의 효율성을 재검토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7조의 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를 실시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 결과, 부당한 조직 및 정원운영에 대하여는 해당부처에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조직진단 및 정원감사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타 점검·감사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3) 각 부처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감축이 가능한 분야 및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는 등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III. 知識政府에 걸맞는 弹力的 組織運營方式 擴大

1.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弹力的 組織運營

(1) 행정자치부장관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부조직의 『팀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활용가능분야의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 긴급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임시조직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 인사, 서무, 행정관리 등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의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을 강구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탄력적 조직관리의 기반을 조성한다.

-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적 조항을 완화·폐지한다.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한다.
- 전자정부 구축 등 조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형태의 출현에 대비하여 필요한 규정을 보완한다.

(3) 각 부처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적 조직관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

- 총리령 또는 부령(직제시행규칙)에 위임된 과단위이하 하부기구의 자율개편권과 직급별 정원범위내 기관간 정원의 배정 및 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 긴급한 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식기구 설치전에 그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Project team, Task force 등 임시조직 · 한시조직을 적극 활용한다.
-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단위별 정원배정을 실·국단위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科學·技術·研究 等 專門家 爲主의 職位 擴大

- (1)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일반행정직렬로만 규정되어 있는 직위에 대하여 해당부처의 실정에 맞게 기술직렬 등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 등 전문직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 각 부처의 장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시 가능한 한 ‘행정직렬’ 직위를 ‘행정직렬 또는 기술·연구직렬’ 복수 직위로 전환하여야 한다.
- 각 부처의 장은 특히 4급이상 상위직급 직위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하위직급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술·연구직렬의 직위가 많은 부처의 장은 총무과, 기획 관리실 등 행정지원부서의 직위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부처의 업무성격, 직렬별 인력현황 및 인력수급 상황 등을 분석하여 과학·기술·연구 등 전문직위의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세부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정원감사 및 각 부처의 직제개정 요구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責任運營機關制度의 內實化 및 持續的 發展

(1)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책임운영기관 시행 부처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 및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의 장은 책임운영 기관제도의 미비점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개정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각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2002년도에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할 대상 기관을 발굴·추진하되, 우선적으로 현재 책임운영기관을 두지 않고 있는 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청단위 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행정자치부장관과 책임운영기관 시행부처의 장은 책임운영 기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기관운영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5)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0. 12. 28)에 보고된 개선방안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6)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政府組織管理의 知識情報化 促進

- (1)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전자정부와 정보통신기술 (IT) 활용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조직 및 업무절차를 재설계 하여야 한다.
- 수행기능에 대한 재검토, 업무수행방식의 능률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분야·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는 축소하고, 핵심 업무·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역량을 집중한다.
- (2)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정부 조직관리업무에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은 기 개발된 「조직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조직 및 인력 등의 변동사항을 On-Line으로 처리하는 등 정부조직관리의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부처의 장은 정원배정표, 정부위원회 현황 및 산하단체 현황 등의 각종 조직관리 관련보고서 「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org.mogaha.go.kr>)을 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에 조직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도 내실화하여야 한다.

IV. 委員會 整備 및 行政權限 委任委託 內實化

1. 政府委員會 整備 및 運營의 內實化

가. 委員會 整備 推進 및 委員會 新設 抑制

(1) 2001년은 『제11차 위원회 정비의 해』로서, 각 부처의 장은 현행 보유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한 후 기시달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1.1.16, 조정12200-18호)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거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설립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한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미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장기간 미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폐지한다.
- 다른 위원회와 주요기능 또는 위원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토록 하고, 순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거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축소·운영토록 한다.

(2) 각 부처의 장은 불요불급하거나 기능상 중복되는 유사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 상계하거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위원회 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나. 委員會 運營의 內實化

- (1) 각 부처의 장은 위원회 구성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의 실무책임자 위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의 장은 회의개최전에 반드시 회의안건을 사전 배부하여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설 위원회의 경우에는 최초회의 소집전에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목적·기능·업무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심도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委員會내 市民團體 및 女性의 參與 擴大

- (1) 각 부처의 장은 기시달된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 확대 지침』(2000.2.17, 조정12210-62 : 200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중 붙임3)과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확대 실태조사 결과 통보』(2001.1.9, 조정12200-6호)에 따라 금년말까지 위원회내 위촉위원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이 20% 수준에 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의 장은 위원의 신규 또는 재위촉시 시민단체 추천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하고, 특히 2000년도중 위원의 신규 또는 재위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참여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16개부처 46개 :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참여확대 실태조사 결과통보』참조)는 2001년 참여 목표율의 달성을 차질이 없도록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 (3) 각 부처의 장은 위원을 추천받을 시민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활동실적 등을 참고로 국민의 여론 및 공익을 대변할 수 있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단체를 2개 이상 선정하여 위원추천을 의뢰도록 하고, 사적이익이나 특정이익만을 추구할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시민단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각 부처의 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중을 2001년도에 28%, 2002년도에 30%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각 부처의 장은 여성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타정부위원회에 기위촉되어 활동중인 자는 가급적 배제하여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행정자치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은 정부위원회내 시민단체 및 여성위원의 참여확대지침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政府傘下團體의 效率的 管理

- (1) 각 부처의 장은 『정부 및 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강화에 관한 훈령』('92 국무총리훈령 제259호)에 따라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정부조직관리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의 장은 산하단체 신설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행정기관 및 기존 산하단체와 기능상 중복되거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협의대상기관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는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서 별도의 육성법·지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
 - 협의시기 : 해당부처의 산하단체 설립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협의
- (3) 각 부처의 장은 정부업무의 대행, 위탁 등을 위해 산하단체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소관기능 축소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산하단체 신설협의시, 정부조직과 동일한 차원에서 그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3. 行政權限의 委任 및 民間委託 · 移讓 推進

가. 對象事務의 發掘 · 推進

- (1) 각 부처의 장은 소관사무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民間에 위탁 · 이양할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 · 추진하여야 한다.
 - 허가 · 인가 · 등록 등 민원사무, 구체적인 정책 집행사무, 일상 반복적인 사무 등을 소속기관으로 위임한다.
 - 현업 및 생산 · 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연구 · 조사 · 검사 기능, 공공시설의 관리 · 운영기능 등을民間으로 위탁 또는 이양한다.
- (2) 각 부처의 장은 기능이관에 앞서 이관대상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수용태세 등을 정밀 분석하여야 한다.
- (3) 각 부처의 장은 단위사무 보다는 포괄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관을 추진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事後管理의 強化

- (1) 각 부처의 장은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전승인 · 보고 · 협의 등 사실상의 사전통제를 지양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의 장은 이관된 사무처리기관에 대하여 각종 정보 및 기술의 제공, 인력과 예산의 이관 등 적절한 행 ·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각 부처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임·위탁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임·위탁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개별법률의 제·개정시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4) 각 부처의 장은 이관된 사무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民間委託의 實效性 確保

- (1) 각 부처의 장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각 부처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각 부처의 장은 민간위탁시 기통보한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조정12240-177, '99.8.21, 조직관리 홈페이지[<http://org.mogaha.go.kr>]에 게재)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여야 한다.
- (4)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처별 민간위탁·이양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行政事項

1. 2001년 정부구조조정 세부추진계획 제출

(1) “2001년도 인력감축 및 기구개편계획” 해당부처(재정경제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철도청, 해양수산부)는 인력감축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을 2001. 4. 30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함

2. 2002년도 소요정원 제출

(1) 내년도 소요정원안 제출계획이 있는 부처는 본 지침 4쪽을 참조하여 「2002 소요정원(안)」을 2001. 4. 30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함

3. 「정원감축계획」 관련 사항

(1) 본 지침 5~6쪽의 「정원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이양

(1) 각 부처는 2000년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실적과 2001년중에 조치예정인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타 기관 위탁 포함)·이양 대상사무와 그 조치계획을 각각 [붙임1] 및 [붙임2]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2001. 4. 10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함

【붙 임 1】

2000년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실적

부 첨 명 :

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위탁 및 이양 근거법령	위임·위탁 및 이양일자	수임·수탁 및 이양 대상기관	비 고

< 작성요령 >

1. 비고란에는 지방위임, 소속기관위임, 타기관위탁, 민간위탁(아웃소싱·업무대행 포함), 민간이양 등 구체적인 유형 기재
2. '99. 5. 24 정부조직개편시 확정된 민간위탁·이양사무(200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참조)에 대한 추진실적은 비고란에 별도로 명기할 것

【붙 임 2】

2001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이양사무와 조치계획

부 첨 명 :

대상사무명	근거법령	수임·수탁 및 이양 대상기관	조치계획	비 고

< 작성요령 >

1. 수임·수탁 및 이양대상기관란에는 ○○청, ○○사무소, ○○공사, ○○협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
2. 조치계획란에는 「2001. ○월중 법령 개정」, 「2001. ○월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시 조치」 등 조치시기·조치방법 및 선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비고란에는 소속기관위임, 타기관위탁, 민간위탁(아웃소싱·업무대행 포함), 민간이양 등 구체적인 유형 기재
4. '99. 5. 24 정부조직개편시 확정된 민간위탁·이양 대상사무 (200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참조)는 비고란에 별도로 명기 할 것